

第52回
(閉會中)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運營委員會 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 11月 14日(火) 10時 15分
場 所 運營委員會室

議事日程

1. 第53回 鍾路區會議 臨時會 開議時 協議의 件
2. 第53回 鍾路區會議 臨時會 議事日程 協議의 件

審査된 案件

1. 第53回 鍾路區會議 臨時會 開議時 協議의 件 1面
2. 第53回 鍾路區會議 臨時會 議事日程 協議의 件 2面

(10時 15分 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서 在籍委員 9名 中 出席委員 7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제 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 나 없이 상당히 바쁜 때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委員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겠습니까 마는 11월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 11월, 12월 결실을 한번 봐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로 인해서 여독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주신 委員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는 참 역사상 우리 개국 이래 처음으로 중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입니다. 참으로 만시지탄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정국도 비자금으로 해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우리 종로구의회 만은 점진적으로 좋은 절차 속에서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여러 가지 案이 있습니다마는 일정을 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겠습니다.

우선 의안계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案係長 洪柱喆 議案係長 洪柱喆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종로구의회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9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와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議案係長! 수고하셨습니다.

1. 第53回 鍾路區會議 臨時會 開議時 協議의 件 (10時 19分)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1항 第53回 鍾路區會議 臨時會 開議時 協議의 件을 상정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 53회 임시회 개의시와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해 왔습니다. 委員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의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議長께서는 '95년 11월 14일 금일 11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개회식 직후에 개의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委員님들 토론하실 위

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1차 개의시각은 議長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개회시각은 '95년 11월 14일 11시에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第53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議事日程 協議의 件

(11時 20分)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2항 第53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議事日程 協議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長이 작성해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95년 11월 14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심의하고 휴회한 후, 17일 개의하여 회기를 4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작성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議席에서-의사일정 협의인데 토론하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지금 총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회기가 80일에 정기회의 35일을 제외하면 45일을 우리가 임시회를 하는데 지금 45일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4일간을, 그런데 지금까지 상정 앞으로 임시회를 해야 될 불가분의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4일이 소요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상 본회의의 35일을 넘지 않는데 그 전에 35일은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4일간 사용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요청한 제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照)

議 事 日 程

第53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1月 14日(화) 11:00 개회식	○ 제53회 종로구임시회 개회식 ○ 제53회 종로구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결의(2일간)	본회의장
10월 15-16일 (수·목) 11:00	○ 제1차 시민행정 위원회 1. 안전심의 ○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 1. 월동기 제설대책보고 청취의 건	소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실
11월 17일(금) 11:00	○ 제53회 종로구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조례증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4. 월동기 제설대책 보고 청취의 건 ○ 폐 회	본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
• 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3分 散會)

○出席委員 (8名)

羅在岩 安哲柱 李炳文 玄壽漢
李炯述 丁昌熙 朴鍾植 朴文培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尹柱彩

